

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9082호)

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9088호)

〈영산강·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9093호)

〈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9094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 추가	3

I. 제안경위

의안번호	법률안명	발의일	회부일	제출
2209082	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2025.3.19.	2025.3.19.	정부 제출
2209088	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		
2209093	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		
2209094	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		

II. 제안이유

1.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

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영산강·섬진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4.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 추가

개정안은 시·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[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	
제28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제28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--- ----- 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	
제30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제30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--- ----- 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	
제28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제28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--- ----- 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	
제17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제17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--- ----- 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개정안의 4개 법률은 한강·낙동강·금강·영산강 수계의 수질 보전과 물환경 개선을 위하여 ‘수질개선특별회계’ 제도¹⁾를 두고 있음.

1)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)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시·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)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·도 및 시·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)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·도 및 시·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)
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특별회계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각 법률에 따라, 동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으며, 국가 또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의 보조금,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²⁾되어 수계별 정화사업,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됨.

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,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에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,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제외하고 조례로 별도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³⁾임.

현행법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하고, 이에 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4대강 수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 확충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이에 개정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

2)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광역시·도의 보조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(타 수계법 생략)

3) 「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고,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
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546